|  |  |  |
| --- | --- | --- |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13호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1. 이 통지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1)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사업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대학 및 재정부•세무총국이 인정한 기타 비영리조직이어야 한다.(2)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3) 취득한 수입은 해당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승인을 받았거나 정관에 규정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4) 재산 및 그 파생이자는 합리적인 급여지출을 제외하고 분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5) 등기승인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이 말소된 후의 잔여재산은 공익적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조직과 성격•취지가 동일한 조직에게 기증하는 등 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6) 투입인은 해당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하여 그 어떠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입인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부서를 제외한 법인, 자연인과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7) 직원의 급여•복지는 규정된 비율 이내에서 지출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당해 조직의 재산 분배에 변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중에서 직원의 평균 급여수준은 세무등기소재지 지시(地市)급[지시(地市)급 포함] 이상 지역의 동일업계, 동일유형 조직 평균 급여수준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의 복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8) 과세소득 및 관련 원가•비용•손실은 면세소득 및 관련 원가•비용•손실과 구분하여 채산하여야 한다.2. 성급(성급 포함) 이상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소재지 성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이 통지에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시(地市)급 또는 현급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지시(地市)급 또는 현급 세무주관기관에 각각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이 통지에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정•세무부서는 상기 관리권한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에 대하여 연합심사•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3. 면세자격을 신청하는 비영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보고서;(2) 사업기관•사회단체•재단•사회복지기구의 정관 또는 종교활동장소•종교대학의 관리제도;(3) 비영리조직등록등기증서 사본;(4) 직전연도의 자금출처 및 사용상황, 공익활동 및 비영리활동 종사 내역과 상황;(5) 급여제도, 직원 평균 급여수준, 급여•복지 총지출 비율, 주요 인력 급여 정보(최소한 급여수준 랭킹 10위권 안의 인력 포함)가 포함된 직전연도 급여상황 전문 보고서;(6)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가 검증한 직전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7) 등기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사업기관•사회단체•재단•사회복지기구•종교활동장소•종교대학의 직전연도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 발전상황 또는 비영리활동 자료;(8) 재정•세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당해 연도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의 경우 본 조 제(1)호~제(3)호에 규정한 서류와 본 조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신청연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 조 제(6)호, 제(7)호 규정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4.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영리조직은 면세수혜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면세수혜자격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실효된다.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재심사는 면세수혜자격 최초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5. 비영리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기일에 맞춰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서 면세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면세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는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납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반드시 추징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이 말소시 이 통지 제1조 제(5)호의 잔여재산처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유관부서는 일상 관리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이 수혜연도에 이 통지에 규정한 면세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허가한 재정•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허가한 재정•세무부서는 이 통지에 규정한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조세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6. 이미 면세자격을 인정받아 면세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비영리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연도부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등기관리기관이 후속관리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이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2) 인정 신청 과정에서 조작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3) 납세신용 등급이 세무부서에 의해 C급 또는 D급으로 평정된 경우;(4) 특수관계자거래 또는 비특수관계자거래와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재산을 변형적으로 이전•은닉•분배한 경우;(5)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중대위법및신용불량자 명단에 추가된 경우;(6) 불법 정치활동에 종사한 경우.상기 제(1)호~제(5)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해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재정•세무부서는 그가 자격을 취소당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1년 내에 해당 조직의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6)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해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재정•세무부서는 해당 조직의 인정 신청을 다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면세수혜자격 취소사유 발생 연도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7. 각급 재정•세무부서와 그 직원이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위법•범칙행위를 행하는 경우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8.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4]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재정부세무총국2018년 2월 7일 |  | **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8〕13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第二十六条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八十四条的规定，现对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明确如下：一、依据本通知认定的符合条件的非营利组织，必须同时满足以下条件：（一）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设立或登记的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社会服务机构、宗教活动场所、宗教院校以及财政部、税务总局认定的其他非营利组织；（二）从事公益性或者非营利性活动；（三）取得的收入除用于与该组织有关的、合理的支出外，全部用于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的公益性或者非营利性事业；（四）财产及其孳息不用于分配，但不包括合理的工资薪金支出；（五）按照登记核定或者章程规定，该组织注销后的剩余财产用于公益性或者非营利性目的，或者由登记管理机关采取转赠给与该组织性质、宗旨相同的组织等处置方式，并向社会公告；（六）投入人对投入该组织的财产不保留或者享有任何财产权利，本款所称投入人是指除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外的法人、自然人和其他组织；（七）工作人员工资福利开支控制在规定的比例内，不变相分配该组织的财产，其中：工作人员平均工资薪金水平不得超过税务登记所在地的地市级（含地市级）以上地区的同行业同类组织平均工资水平的两倍，工作人员福利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八）对取得的应纳税收入及其有关的成本、费用、损失应与免税收入及其有关的成本、费用、损失分别核算。二、经省级（含省级）以上登记管理机关批准设立或登记的非营利组织，凡符合规定条件的，应向其所在地省级税务主管机关提出免税资格申请，并提供本通知规定的相关材料；经地市级或县级登记管理机关批准设立或登记的非营利组织，凡符合规定条件的，分别向其所在地的地市级或县级税务主管机关提出免税资格申请，并提供本通知规定的相关材料。财政、税务部门按照上述管理权限，对非营利组织享受免税的资格联合进行审核确认，并定期予以公布。三、申请享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需报送以下材料：（一）申请报告；（二）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社会服务机构的组织章程或宗教活动场所、宗教院校的管理制度；（三）非营利组织注册登记证件的复印件；（四）上一年度的资金来源及使用情况、公益活动和非营利活动的明细情况；（五）上一年度的工资薪金情况专项报告，包括薪酬制度、工作人员整体平均工资薪金水平、工资福利占总支出比例、重要人员工资薪金信息（至少包括工资薪金水平排名前10的人员）；（六）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上一年度财务报表和审计报告；（七）登记管理机关出具的事业单位、社会团体、基金会、社会服务机构、宗教活动场所、宗教院校上一年度符合相关法律法规和国家政策的事业发展情况或非营利活动的材料；（八）财政、税务部门要求提供的其他材料。当年新设立或登记的非营利组织需提供本条第（一）项至第（三）项规定的材料及本条第（四）项、第（五）项规定的申请当年的材料，不需提供本条第（六）项、第（七）项规定的材料。四、非营利组织免税优惠资格的有效期为五年。非营利组织应在免税优惠资格期满后六个月内提出复审申请，不提出复审申请或复审不合格的，其享受免税优惠的资格到期自动失效。非营利组织免税资格复审，按照初次申请免税优惠资格的规定办理。五、非营利组织必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等有关规定，办理税务登记，按期进行纳税申报。取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应按照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免税手续，免税条件发生变化的，应当自发生变化之日起十五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告；不再符合免税条件的，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未依法纳税的，主管税务机关应当予以追缴。取得免税资格的非营利组织注销时，剩余财产处置违反本通知第一条第五项规定的，主管税务机关应追缴其应纳企业所得税款。有关部门在日常管理过程中，发现非营利组织享受优惠年度不符合本通知规定的免税条件的，应提请核准该非营利组织免税资格的财政、税务部门，由其进行复核。核准非营利组织免税资格的财政、税务部门根据本通知规定的管理权限，对非营利组织的免税优惠资格进行复核，复核不合格的，相应年度不得享受税收优惠政策。六、已认定的享受免税优惠政策的非营利组织有下述情形之一的，应自该情形发生年度起取消其资格：（一）登记管理机关在后续管理中发现非营利组织不符合相关法律法规和国家政策的；（二）在申请认定过程中提供虚假信息的；（三）纳税信用等级为税务部门评定的C级或D级的；（四）通过关联交易或非关联交易和服务活动，变相转移、隐匿、分配该组织财产的；（五）被登记管理机关列入严重违法失信名单的；（六）从事非法政治活动的。因上述第（一）项至第（五）项规定的情形被取消免税优惠资格的非营利组织，财政、税务部门自其被取消资格的次年起一年内不再受理该组织的认定申请；因上述第（六）项规定的情形被取消免税优惠资格的非营利组织，财政、税务部门将不再受理该组织的认定申请。被取消免税优惠资格的非营利组织，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未依法纳税的，主管税务机关应当自其存在取消免税优惠资格情形的当年起予以追缴。七、各级财政、税务部门及其工作人员在认定非营利组织免税资格工作中，存在违法违纪行为的，按照《公务员法》《行政监察法》等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八、本通知自2018年1月1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4〕13号）同时废止。财政部税务总局2018年2月7日　　　 　　 |